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12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확대(박민규의원안, 추경호의원안) ····· 2

Ⅰ.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128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9. 19.

(3) 회 부 일 : 2025. 9.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시키는 것 외에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 확대(박민규의원안, 추경호의원안)

<table>
<tr><th>현 행</th><th>박민규의원안</th><th>추경호의원안</th></tr>
<tr>
<td>□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제1항 및 제2항)

<table>
<tr><th>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th>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th><th>세액
공제
율</th></tr>
<tr><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td><td rowspan="2">·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900만원</td><td>15%</td></tr>
<tr><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td><td>12%</td></tr>
</tabl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전환금액 세액공제(제3항 및 제4항)

-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에 가산</td>
<td>□ 세액공제율 상향 일원화(안 제1항 및 제2항)

<table>
<tr><th>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th>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th><th>세액
공제
율</th></tr>
<tr><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td><td rowspan="2">·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900만원</td><td rowspan="2">15%</td></tr>
<tr><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td></tr>
</table>

○ (현행과 같음)

○ 시행일:2026.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td>
<td>□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금액 세액공제한도 상향(안 제3항 및 제4항)

○ (현행과 같음)

- 전환금액 10% 또는 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에 가산

○ 시행일:2026.1.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td>
</tr>
</table>

* 박민규의원안 2025. 2. 14. 발의(의안번호 8172), 추경호의원안 2025. 9. 19. 발의(의안번호 13128)

□ 2건의 개정안은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박민규의원안은 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15%로 상향하려는 것이고,

추경호의원안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야 납입한 경우 가산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의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연금계좌세액공제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한도로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제도의 연혁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각종 연금에 대한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연금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2000년 정기회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에 대하여 "불입 시 소득공제, 수령 시 과세"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였음.

2006년에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10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4년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방지를 위하여 소득공제를 12%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며,

2015년에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 외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의 합산액 한도 700만원이 신설되는 한편,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하였고,

2017년부터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2억원) 초과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2022년에는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을 4,500만원으로 완화하고, 납입한도 관련한 종합소득 1억원 기준을 삭제하는 동시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납입 합산액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음[1].

1) 참고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같이 이루어졌음.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주요 연혁]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개정연도</th><th>2000년</th><th>2006년</th><th>2010년</th><th>2014년</th><th>2015년</th><th>2017년</th><th>2022년</th></tr>
<tr><th colspan="3">소득공제</th><th colspan="4">세액공제</th></tr>
<tr><td rowspan="2">공제한도</td><td>연금저축계좌</td><td rowspan="2">240만원</td><td rowspan="2">300만원</td><td rowspan="2">400만원</td><td rowspan="2">400만원</td><td>400만원</td><td>400만원
(종합소득1억원↑ : 3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퇴직연금 합산 시</td><td>700만원</td><td>700만원
(종합소득1억원↑ : 700만원)</td><td>900만원</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제율</td><td colspan="3" rowspan="2">소득공제
(6%～45%)</td><td colspan="4">12%</td></tr>
<tr><td colspan="3">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5%</td><td>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시 15%</td></tr>
</table>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기준 1조 8,28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 2조 3,769억원, 2026년에는 2조 5,064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중·저소득자에게 48.8%, 고소득자에게 51.2%가 귀착될 것으로 분석[2]되었음.

[연도별 연금계좌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금액	13,226	15,647	15,428	18,280	23,769	25,06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박민규의원안의 경우, 현행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총

2)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p. 27.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수준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12%, 그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로 차등 적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소득과 무관히 15%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안의 경우, 현행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로의 납입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사적연금 가입 및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의 퇴직 자산 축적을 장려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3)]

3)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라트비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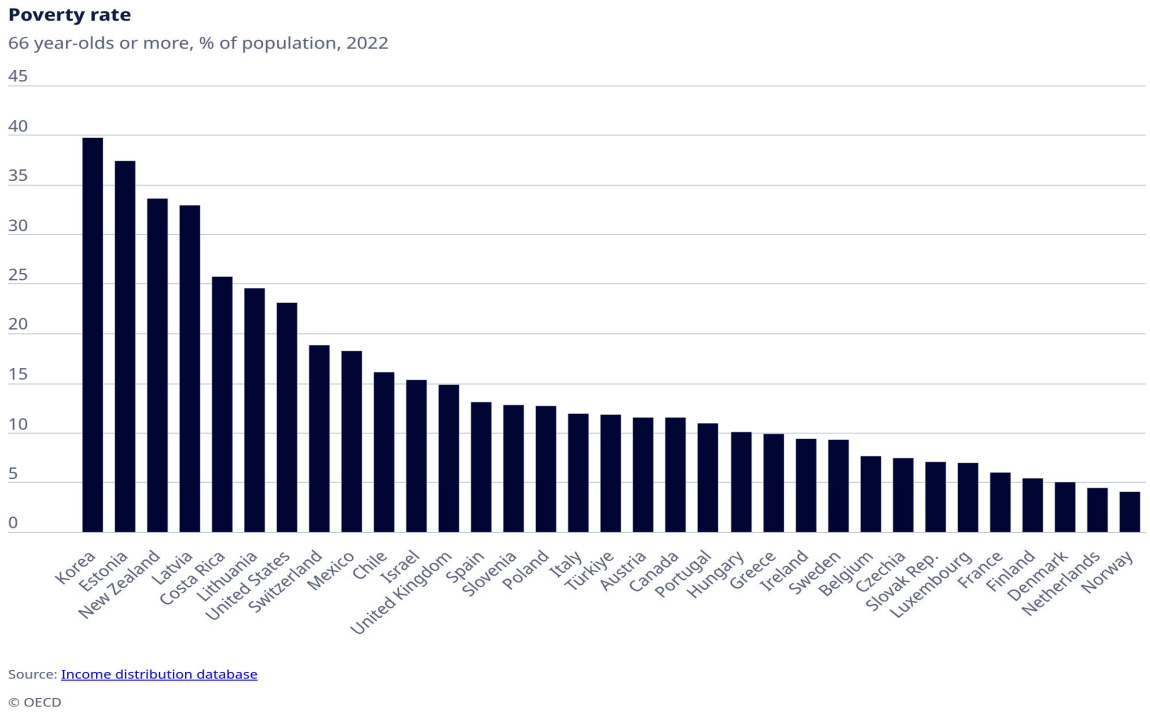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이는 현 세대 고령층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율, 낮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 고령층의 근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79세 연령층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포함 등) 월 평균 수령액은 82만원 수준이며, 연금수령자 중 73.6%가 월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4)]

이와 같이 노인빈곤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가입율은 17%로, 미국(67.9%), 일본(56.5%), 독일(66.0%), 영국(54.0%) 등 주요 국가의 1/3~1/4 수준이며, 사적연금 납입액 대비 세제 지원액의 비율도 19.7%로, 미국(40.9%), 일본(31.0%) 등 주요 국가보다 저조함.

[주요 국가의 사적연금 가입률 및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가입률	17.0%	67.9%	56.5%	66.0%	54.0%	32.6%
세제지원율	19.7%	40.9%	31.0%	21.3%	23.7%	28.2%

자료: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 한국 vs G5 비교」, 한국경제연구원, 2022. 1.

한편, OECD는 우리나라 연금저축계좌의 세제혜택 수준이 비교 대상국 36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음.[5)]

따라서 세액공제율을 근로소득에 차등을 두지 않고 15%로 상향

4) "2024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2024. 7. 30.

5) 국가들의 평균소득자가 세제혜택이 있는 임의가입 개인연금에 근로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했을 때 세제혜택 규모가 얼마나 되는 지 추정했을 때, 총기여금의 현재가치 대비 총세금축소액의 현재가치 비율 비교 시 우리나라의 연금저축계좌는 약 18%로 비교대상 OECD 36개국 중 28위 수준임. "세제혜택계좌 가입률 제고를 위한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KCMI (2024), "Financial Incentives and Retirement Savings", OECD, 2018.

일원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추경호의원안에 의할 경우, 가산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ISA에 적립해 둔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유인이 커져, 단기 투자성 자금이 55세 이후 분할수령을 전제로 하는 장기성 노후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가입자의 노후소득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행 300만원 한도에서는 공제규모가 최대 49만 5천원(15% 공제율 기준)이나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최대 공제규모는 99만원으로 절세효과 체감도가 높아져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박민규의원안에 따른 효과가 상위소득계층 위주로 귀착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15년 세법개정 당시 노후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의 연금납입을 유도하기 위해, 12% 단일세율이었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만 3%p 상향하여 15%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런데 박민규의원안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세액공제율은 3%p 인상됨에 따라(12%→15%) 가입 유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나, 노후 빈곤 문제에 더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혜가 없어, 해당 소득군에 대한 연금납입 유인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둘째, 납입 연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납

입 한도액은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 600만원(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산하는 경우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종전 1,200만원이었으나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참고로, 박민규의원안의 경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을 일원화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등의 조세특례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에 집중하고, 제도 자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차등설정[6]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추경호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공제 한도가 커질수록 ISA 잔고가 충분하고 연금계좌 추가 납입 여력이 있는 계층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면, ISA 미보유자·저소득층·불안정 고용자는 제도상 접근성이 낮아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이 약화될 수 있음.

둘째, 조세지출 대비 저축규모 순증 효과는 불확실함. 개정안에 의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로 신규자금이 유입되기보다는 기존의 ISA

---

6)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좌 자금이 연금저축계좌로 단순히 옮겨지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국가재정 차원에서는 조세지출에 따른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만, 국민경제 전제 차원에서 저축 규모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와 'ISA계좌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동함에 따른 사회적 효용'을 비교형량하여 개정의 실익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박민규의원안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을 연간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15%로 일원화할 경우 소득세수는 2026년 3,303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7,326억원(연평균 3,4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박민규의원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박민규의원안	△3,303	△3,382	△3,463	△3,546	△3,631	△17,326	△3,4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